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8
----------	-----

발의연월일 : 2008. 2. 21.

발 의 자 : 박수범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찬성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등) 시장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2.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홍보,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 강구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실시(년 1회 이상)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침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등)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정책 토론 및 평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②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하여야 한다.

③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기준 및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동편의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업무)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에 대한 이용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센터의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설치·운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3인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도로·교통·건축·복지 등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예산의 확보)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경과 조치 등) 종전 조례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위탁 관련 사항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38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중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4.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항공법·항만법·해운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②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소재하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2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2월 21일 박수범의원외 7인
2. 회 부 일 자 : 2008년 2월 21일
3. 상 정 일 자 :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 2. 27)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박수범의원)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환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조례제명을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 이용대상자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이동편의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운영, 수행업무, 위탁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6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신규 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대체확보, 주요 환승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확충,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운행시간 연장,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은 교차로 신호시간 조정, 장애물 없는 보도 조성

보행자 위주 도로 정비 강화 등 보행환경과 대중교통이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 토 론 요 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